무역상무연구 제76권 2017. 12, pp. 125~145. 논문접수일 2017. 11. 30. 심사완료일 2017. 12. 14. 게재확정일 2017. 12. 15.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관련한 주요 쟁점

- 2015년 보험법 상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신건훈* · 이병문**

- I. 서 론
- Ⅱ. 영국 보험법 상 보험금지급의무의 법적 성격
- Ⅲ. 2015년 보험법 상 주요 개정내용
- IV. 결 론

주제어: 2015년 보험법, 보험금지급 지체, 손해예방원칙, 손해보험, 합리적인 기간, 영국 보험법개혁

Ⅰ. 서 론

우리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계약 상 보험자가 부담하는 주된(일차적인) 의무이다. 한편 영국 보험법 상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 상 보험자의 주된 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소위 손해예방원칙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 상 채무액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기인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동 경영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제1저자), E-Mail: gunhoon1@gnu.ac.kr

^{**}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bmlee@ssu.ac.kr

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영국 법률 상 손해배상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체에 기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인정되 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함으로써 피보 험자가 입은 추가적인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 이하에서는 LC라고 칭함)는 2014년 관련 법원칙의 개혁을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1) LC는 이 보고서에서 다수의 법률영역에 대한 개혁권고안을 영국 재무부에 제출하였으나, 재무부는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 지체에관련되는 개혁권고안을 제외한 입법 초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2) 결과적으로「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이 제정되었다.3) LC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보험금지급 지체 관련 법률개혁안은 이후 2016년 5월에 제정된「2016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16)의 일부로서 포함되고,4) 결과적으로 2014년 보고서의 관련 입법안은 2015년 보험법의 일부로서 추가 및 편입되었다.

이 논문은 LC의 2014년 보고서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새롭게 추가·편입된 보험금지급 관련 보험자의무와 관련한 핵심쟁점을 규명하고, 그 법률적 의미를 해석 및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국 보험법 상 보험금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후, 2015 보험법 상 주요 개정내용의 법률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¹⁾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Law Commission, No. 353, 2014 (이하에서는 LCCP 353 이라고 칭함).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계약과 구분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생성된 영국 보험법의 특유한 원칙, 즉 선의의무, 워런티, 사기적인 보험금청 구에 대한 구제수단 및 보험금지급 지체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법률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보험법의 특유한 원칙은 영국 보험법 및 보험시장의 발전동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상당한 비판 및 법률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²⁾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11, p. 293.

^{3)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에 발효되었다.

^{4) 2016}년 기업법 Part 5(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관련 규정은 2015년 보험법의 Part 4A(Late Payment of Claims)로 편입되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새롭게 창출된 보험자의 의무(제 13A조 보험금지급에 관한 묵시조항)는 2015년 보험법 제13조(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 제수단)의 후속조항으로 삽입되었다(2016년 기업법 제28조 (1)항 참조). 또한 관련 규정은 2017년 5월 4일에 발효되었다(中出 哲, "イギリス2015保險法の概要", 損害保險研究 第78卷 第2號, 2016. 8, p. 173).

Ⅱ. 영국 보험법 상 보험금지급의무의 법적 성격

1. 보험금지급의무의 법적 성격

1) 일반계약법 상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영국의 일반계약법 상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당사자는 첫째, 보통 금전적인 형태 의 실제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둘째, 당해 손해는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예견가능한 손해였다는 사실, 셋째, 피해당사자는 손해경감을 위하여 합리 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을 전제로 계약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5)

영국 상원은 1854년 Hadley v. Baxendale 사건이에서 예견가능한 손해(foreseeable loss)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손해의 유형이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여기서 예견가능한 손해란 (가) 공정성 및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통상적인 일의 진행과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손해 및/또는 (나)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 의사소통에 의하여 인식된 특수한 상황에서 초래된 손해를 의미한다.7)

한편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에 기인하여 청구가능한 손해배상 액을 결정하는 별개의 중요한 제약요소이다. 영국 법률 상 계약위반의 피해당사자는 배상청구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되며, 이는 피해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규모를 경감하기 위하여 일체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8)

⁵⁾ A. G. Guest *et al, Chitty on Contracts,* 31th Edition, Sweet & Maxwell, 2012, Ch. 26; G. H. Treitel, *The Law of Contract,* 10th Edition, Sweet & Maxwell, 1999, Ch. 19 참조. 영국 계약법 상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 약정금액의 청구, 특정이행 및 원상회복 등이 있으나(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pp. 509~578 참조), LC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특히 손해배상이 유용한 구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6) (1854) 156} ER 145, 354(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원정, 전게논문, pp. 295~296 참조).

⁷⁾ LCCP 353, paras. 25.4;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동향-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최 대선의무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9, p. 44.

⁸⁾ LCCP 353, paras. 25.6~25.7.

2) 영국 보험법 상 보험금지급의무의 법적 성격

우리 보험법 상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수령의 대가로서 보험의 목적인 재산이나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 즉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또는 기타의 편익을 제공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되는 쌍무계약으로서, 보험금지급책임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계약 상 보험자 가 부담하는 주된(일차적인) 의무이다.9 한편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한,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주된 의무는 피보험자의 손해발생을 예방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보험자의 주된 의무인 손해예방의무의 위반(즉, 계약위반)에 부수 하는 이차적인 의무로서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영국 보험법의 입장은 1990년 The Fanti 사건 및 The Padre Island 사건에 대한 공동판결문10)에서 잘 나타난다. 이 사건 에서 상원의 Lord Goff는 "실손보상약속은 단순하게 보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특정한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hold harmless)시키겠다는 약속이다. 일 단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예방약 속을 위반하게 되고, 이는 보험자의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영국 보 험법 상 인정되는 이례적인 법원칙으로서 "손해예방원칙"(hold harmless principle)을 설명하였다.11) 따라서 영국 보험법 상 실손보상원칙에 의거하는 손해보험계약은 외 부의 불법침입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방지의무를 부담하는 보안회사와의 보안계 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즉, 보안회사가 외부의 불법침입을 방지하지 못함으로 써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계약위반에 기인하여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그 결과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지급을 거절 또는 지체함으로써 입은 추가적인 간접손해와 관련하여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손해보험계약 상 보험금은 계약 상 채무가 아니라, 보험자의 계약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손해의 발생 즉시 보험자의 주된(일차적인) 의무는 위반된 것으로 간주되고, 보험자는 계약위반에 기인하여 부수적·이차적인 의무로서 보험금 지급이라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영국 법률 상 이차적인 의무의 위반에 대한 후속적인(삼차적인) 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차적인 의무인 손해배상금 (즉, 보험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 또는 지체하더라도, 이에 기인하여 발생한 추

⁹⁾ 양승규, 보험법의 원리, 삼지원, 2000, p. 64 및 p. 79 참조.

¹⁰⁾ Firma C-Trade SA v. Newcastle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The Fanti); Secony Mobil Oil Inc. v. West of England Ship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The Padre Island) [1991] 2 AC 1, 35-36. 이 판례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 2건의 사건을 함께 판결한 것이다.

¹¹⁾ 신건훈, 전게논문, p. 46.

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상원은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금의 청구는 제소의 원인이 되지 못하며, 법률 상 배상금의 지급지체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은 법정 이자"뿐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12)

이러한 영국 판례법의 입장에 대한 대표적 일례는 Sprung v. Royal Insurance (UK) Ltd. 사건13)이다.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인 Mr. Sprung은 소규모기업을 소유 및 운 영하였고, 도난 및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손상"위험으로부터 자신의 공장을 보 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파괴주의자들의 공장침입 및 파괴행위로 인하여 공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 Mr. Sprung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공장의 재건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결 국 기업은 6개월 후에 파산하였다. Mr. Sprung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및 보험 금의 지급지체에 기인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하였고, 보험자는 4년 후에 항변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이 4 년 전에 지급되었어야 하며, 피보험자인 Mr. Sprung에게 <보험금+지체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Mr. Sprung이 보험금지급 지 체의 결과로서 £75,000의 추가적인 간접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추가적인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명백한 거 부감을 표명하면서" 배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구속된다고 인식하였다. 이 사건에서 Beldam LJ는 <보험금+이자>는 Mr. Sprung의 입장에 처한 피보험자를 구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법률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14)

이러한 법원칙에 대한 비판은 보험자가 법정이자 외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금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지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되었다. 주요 비판의 요지는 현행 법률상태에서 명백한 법적 의제(legal fiction), 즉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보험자는 계약위반상태가 된다는 점이고,15) 또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은 계약위반에 기인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계약 상 지급되어야 하는 채무액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16)

¹²⁾ *The President of India v. Lips Maritime Corp.(The Lips)* [1988] AC 395, 425(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건훈, 전게논문, pp. 47~48 참조).

^{13) [1999] 1} Lloyd's Rep. IR 111.

¹⁴⁾ *Ibid.*, pp. 118~119.

¹⁵⁾ J. Lowry and P. Rawlings, "Insurers, Claims and Boundaries of Good Faith", 68 MLR, 2005, pp. 85~90; James Davey, "Unpicking the fraudulent claims jurisdiction in insurance contract law : sympathy for devil?", *LMCLQ*, 2006, pp. 236~238; M.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5th edition, Informa, 2006, para. 30-9B1.

3) 손해예방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계약

영국 보험법 상 보험금의 미지급 또는 지급지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불 인정, 즉 손해예방원칙에 대한 2가지 중요한 예외가 존재하는데, 즉, 정액보험 및 재산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17) 첫째, 손 해예방원칙은 실손보상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계약 (contract of contingency insurance)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액보험 의 핵심은 실손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고의 발생 시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자의 약속이기 때문 이다. 보험자가 약속한 금전(즉,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 우, 또는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은퇴하는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기타 보험수익 자에게 제공되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입은 실제손해와 진정한 상관관계, 즉 실손보 상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가족에게 £10,000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재정적·정서적으로 가족이 입은 손해에 대한 실손보상이 될 수 없다.18) 따라서 정액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주된 의무 는 보험금지급의무이며, 보험금은 계약상 채무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자가 부 당하게 보험금지급을 거절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 계약위반에 기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둘째, 동 원칙은 보험자가 주된 의무로서 금전지급의무가 아니라, 재산상태의 원 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되고, 보험자가 재산의 원상복구(즉, 손상된 재산의 수선 또는 교체)를 선택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일반적 인 계약 상 의무와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산의 원상복구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초래된 예견가능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여타 국가의 입장

보험금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스코틀랜드 법률은 잉글랜드의 법원칙과 상이하며, 손해예방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스코틀 랜드 법률 상, 보험자의 주된 의무는 보험사고를 전제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험금은 계약상 채무로서 인식된다.19

¹⁶⁾ Peter MacDonald Eggers, "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LMCLQ, 2013, p. 348.

¹⁷⁾ LCCP 353, paras. 25.8~25.9.

¹⁸⁾ Peter MacDonald Eggers, op. cit., p. 349.

영국 보험법의 입장은 여타 보통법계 국가의 입장과도 상충된다. 즉, 호주,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보험자의 주된 의무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보험금의 지급의무라고 규정한다. 한편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중국도 보험금의 지급지체와 관련하여 영국보다 관대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20)

2. 법원칙의 문제점

LC의 개혁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중 87%의 전문가는 보험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LC의 개혁권고안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더욱이 81%의 전문가는 보험자가 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LC의 권고안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명하였다.21) 따라서 이 절에서는 LC의 개혁 권고안과 관련하여 각계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법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법률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손해예방원칙은 여타 법원칙과 괴리되는 비일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국 보험법 상 손해예방원칙은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영국의 일반계약법, 비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원칙 및 여타 사법권의 보험법과 불일 치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법리적 관점에서도 옹호하기 어려우며, 법률정책적·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지지근거를 찾기 어렵다. M. Clarke 교수는 이 원칙과 관련하 여 "잉글랜드 보험법체계 상 한가지 오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2)

둘째, 손해보험계약 상 보험자의 주된 의무가 손해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라는 원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보험자는 보안회사와는 달리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보험계약자 또한 보험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가능성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Transthene v. Royal Insurance* 사건23)에서 판사가 지적하듯이, 보험

¹⁹⁾ Carrick Furniture House Ltd. v. General Accident Fire and Life Corp. Ltd. 1977 SC 308; Strachan v. The Scottish Boat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2010 SC 367.

²⁰⁾ LCCP 353, para. 25.29(상기 국가별 구체적인 입장은 이원정, 전게논문, pp. 308~316 참조).

²¹⁾ LCCP 353, para. 26.27.

²²⁾ M. Clarke, "Compensation for failure to pay money due: a 'blot on English common law jurisprudence' partly removed", *JBL*, 2008, p. 291; C. Ying, "Damages for 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122 *Law Quarterly Reviews*, 2006, p. 122.

²³⁾ Transthene Packaging Co. Ltd. v. Royal Insurance (UK) Ltd. [1996] Lloyd's Rep. IR 32, 40.

자가 "화재, 홍수, 교통사고 또는 기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일 수백 내지수천 차례의 계약 위반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은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어렵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와도 괴리되는 비현실적인 법원칙이다.24)

셋째, 손해예방원칙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로 불공정한 법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법률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균형추로서 역할하도록 기대하지만, 해당 법원칙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로 보험자우호적인 법원칙이다.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속한 보험금지급의 요구 및 부당한 거절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법률의 결함은 보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다. 보험금의 지체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항상 피보험자가보험금지급 지체에 기인하여 입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화재나 홍수 손해를 입은 경우, 적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종종 기업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25)

넷째, 손해예방원칙은 영국 보험업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irmic은 "효과적인 보상은 최종정산의 적절성 및 지급의 적시성에 좌우된다. 보험금의 정산과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더라도, 법률 상 적절한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보험자의 합리적인 행동을 촉구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적시에 이루어지는 보험금지급의 중요성 및 법률 상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보험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실무관행은 보험기업의 명성 및 평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자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전체 보험업계의 신뢰는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업계의 이익에도 반하게 된다. 한편 보험금지급 지체와 관련하여 모든 사법권에서 영국보다 더 큰 보호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고 있고,결과적으로 국제보험시장에서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보험법원칙은 영국 보험시장의 매력 및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6)

마지막으로 손해예방원칙은 동시대의 판례법과도 불일치되는 상당히 모순적인 원칙이다. 2007년 상원은 Sempra Metals v. Inland Revenue 사건27)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법원칙을 검토하면서, 피해당사자가 계약위반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영국 법률의 광범위한 명제라고 인식 하였다. Lord Nicholls는 "계약 상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그 결과 로서 초래된 손해와 관련하여 특별한 면책지위를 점하지 못한다"고 판결하면서,

²⁴⁾ LCCP 353, para. 26.5.

²⁵⁾ LCCP 353, paras. 26.8~26.9.

²⁶⁾ LCCP 353, paras. 26.11~26.14.

²⁷⁾ Sempra Metals v. Commission of Inland Revenue [2007] UKHL 34; [2008] 1 AC 561, 93.

이러한 일반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사건은 계약위반에 관계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복구에 관한 청구권에 관계되는 사건이고 보험법 원칙을 취급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위반에 기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 구는 적법하며, 판례법 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내포한다.28)

Ⅲ. 2015년 보험법 상 주요 개정내용

1. 제정법에 근거한 새로운 보험자의 의무 도입

2016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16)의 제정으로 인하여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에 추가·편입된 제13A조 (1)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당한(due)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한다는 것이 일체 보험계약의 묵시조항(implied term)"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험자의 주된 의무로서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해석과 관련하여 4개의 핵심요소가 존재한다.29) 즉, 첫째, 당해 의무는 묵시조항에 의거하여 창출되는 계약 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반계약법 상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 한정된다. 셋째, 상기 묵시조항의 위반에 기인하는 구제권의 근거를 제공하는 보험금청구는 정당한(유효한) 것이어야만 한다. 넷째, 보험계약 상 정당한 보험금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만 한다. 상기 조항과관련하여 4개의 핵심요소를 구체적·순차적으로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의무의 법적 성격

제13A조 (1)항 상 보험자의 의무는 제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무지만, 법정의 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묵시계약조항에 근거한 계약상 의무로서의 성

²⁸⁾ LCCP 353, paras. 26.16~26.17.

²⁹⁾ LCCP 353, para. 28.3.

격을 갖는다.30) 따라서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제정법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 적용되며,31) 일반계약법 상 계약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적용되는 제약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 지체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3가지 제약요건, 즉① 보험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금전 형태의 실제손해가 초래되었다는 사실,② 해당 손해가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가능한 손해라는 사실, 그리고③ 피보험자가 당해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2) 청구권자의 범위

제13A조 (1)항과 관련하여 청구권을 갖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한정되며, 2015년 보험법 제1조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보험자의 합리적인 기간 내 보험금지급의무는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제기된 보험금청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제3의 피해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보험금청구권 외에 보험금지급 지체에 기인하는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권자의 범위는 보통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즉, 첫째, 보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이다. 보험증권은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양도될 수 있는데,32) 보험계약이 갱개(novation)되는 경우에 양수인은 법률적으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제13A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도가 단지 보험금청구권에 한정되는 경우, 양수인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제13A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33)

둘째,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고 제3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이다. 보험계약자가 파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는 영국 법률34)에

³⁰⁾ 영국 계약법 상 계약의 내용은 명시조항(express term)과 묵시조항(implied term)으로 구성되며, 묵시조항은 사실 상(in fact) 계약에 묵시되어 있는 조항, 제정법이나 판례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묵시조항, 관습 또는 관행에 의하여 묵시되는 조항으로 분류되며, 상기 묵시조항은 제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묵시조항이다(이호정, 전게서, pp. 101~107 참조).

³¹⁾ LCCP 353, para. 28.5.

³²⁾ J. Birds, Birds' Modern Insurance Law, 9th Edition, Sweet & Maxwell, 2013, para. 11.2~11.4.

³³⁾ LCCP 353, paras. 28.10~28.11.

³⁴⁾ Third Party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제8조.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보험계약자의 특정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즉, 제3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책임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부담해야만 하는 배상금에 한정하여 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LC는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기인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35)

3) 손해배상의 범위

제13A조 (1)항은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한 정하여 적용되며, 해당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 지체와 관련하여 손 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당 보험금청구가 유효한 것이어 야만 하고, 따라서 보험자는 해당 청구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보험자가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해당 사고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사고이거나, 당해 청구가 사기적인 청구인 경우), 보험금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의무는 존 재하지 않는다.36)

한편 제13A조 (1)항 상 묵시조항의 위반에 근거하는 구제권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한정하여적용된다. 일례로서, £50,000의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어야하고, 이와 별개로 보험계약자가 은행에 £100,000의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은행에 채무액을 상환할 수없었고, 결과적으로 은행이 피보험기업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 지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손해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50,000의 보험금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급되었더라도, 은행의 행정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행정조치에 기인한 추가적인 간접손해는 보험금의 지급 지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험금의 지급 지체가 보험계약자의 추가적인 손해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37)

³⁵⁾ LCCP 353, paras. 28.12~28.13.

³⁶⁾ LCCP 353, para. 28.14.

³⁷⁾ LCCP 353, para. 28.15.

4) 합리적인 기간의 판단기준

LC의 개혁권고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간"의 개념은 의견을 제시한 각계전문가의 핵심관심사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는 제정법 상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동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게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한 반면, 여타 일부 전문가는 개념정의를위한 특정한 기간의 도입이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LC는 관련제정법규정이 소규모의 소비자보험계약부터 대형의 맞춤형기업보험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보험계약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상정해 볼 때, 이 문제는 특히 난점을초래하는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LC는 법적인 확실성과 융통성 간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반면, LC는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제정법 상어느 정도의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고, 결과적으로 보험자행동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제13A조 (2)항 및 (3)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있다. 다만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단기준이 망라적인 기준은 아니며,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은 해당 청구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실의 문제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8)

(1) 보험금청구의 조사 및 보험금산정을 위한 충분한 기간

2015년 보험법 제13A조 (2)항에서는 "합리적인 기간"이란 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사 및 보험금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험자가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향유하고, 결과적으로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사기를 적발 및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을 갖는 것이 보험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보험자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유인은 약화되고, 보험시장의 안정은 저해될 것이다.39)

(2) 기타 고려요인

제13A조 (3)항에서는 보험금의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합리성 여부가 일체의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성의 판단기 준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침을 제공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 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요인이 보험자행동의 합리성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되어 야 하는 일체 요인에 대한 망라적인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유의 될 필요가 있다.40)

³⁸⁾ LCCP 353, paras. 28.22~28.23.

³⁹⁾ LCCP 353, para. 28.26.

① 보험의 유형

일반적으로 보험의 유형은 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사 및 평가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건물보험 하에서 건물의 지반침하와 관계되는 보험금청구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 상 보상되는 손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적인' 기간은 존재할 수 없으며, 건물의 위치, 토양 및 배수장치의 복잡성 등에 따라 조사기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② 청구액의 규모 및 조사의 복잡성

청구된 보험금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사를 요하는 청구는 일반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한다. 예를 들면, 사고발생의 장소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보다 조사가 어렵고 장기간을 요할 것이다.

③ 법령 및 기업내부규정의 준수 여부

청구된 보험금의 취급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관련 제정법, 규칙 또는 보험기업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일 례로서, 일부 전문가는 2003년 국제선체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s)를 언급하였는데, 즉 제46조 (7)항에서는 보험자가 손해사정인이 제출하는 최종정산서를 수령한 후 28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

LC는 보험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지침 또는 내부규정이 상이한 개개상황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제정법 규정은 전체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정법 상 합리적인 기간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보험업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보험금지급기한의 합리성에 관한 표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일반화되고 자율적인 규약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42)

④ 보험자의 통제를 초월하는 외부요인

보험계약자 또는 기타 일체의 제3자가 보험자의 판단에 관계되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보험자의 조사 및 평가가 지체되는 경우, 보험자는 지 급지체와 기인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지 체분에 해당하는 만큼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보험자의 의사

⁴⁰⁾ LCCP 353, paras. 28.30~28.45 참조.

⁴¹⁾ International Hull Clauses 2003, 제46조 7항.

⁴²⁾ LCCP 353, para. 28.45.

결정이 여타 보험자의 행동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예를 들면, 업무장애보험과 재산보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보험자의 통제를 초월하는 외부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함으로써 관련 보험금청구가 급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손해사정인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구보험금에 대한 평가 및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러한요인들은 어느 정도 보험금지급의 지체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합리적인 반박근거에 의거한 보험금지급 지체의 경우

궁극적으로 보험금청구의 유효성이 판명되더라도, 보험금청구 당시에는 보험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해당 청구가 사기적인 청구라고 주장할만한 증거가 일부 존재하거나, 보험계약체결 시에 불고지 또는 부실표시의 존재를 주장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거나, 또는 해당 손해가 보험계약 상 담보되지 않는 사고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보험자는 잠정적으로 효력이 없는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금청구의 유효성 및 청구액의 적절성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할수 있어야 한다. LC는 보험자가 재판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보험금청구의 유효성이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명백하게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의 유효성 또는 청구액의 적절성에 대한 반박의 여지를 가져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입장에 동의하고, 이러한 경우에 지급 지체에 기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43)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5년 보험법 제13A조 (4)항에서는 "보험자가 (청구액 또는 청구액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청구를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의 존재를 입증하는 경우, (a) 반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지 해당 보험금(또는 반박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일부)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보험자가 (1)항의 묵시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b) 보험금청구의 취급과 관련한보험자의 행동은 묵시조항의 위반 여부 및 위반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인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청구의 유효성 또는 청구액의 적절성에 대하여 반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경우, 반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당해 보험금 또는 반박의 대상이 되는 일부보험금의 미지급이 그 자체로서 계약위반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b)호에 의거해 볼 때, 예를 들면 해당 청구에 대한합리적인 반박근거를 갖고서 추가조사를 진행한 경우, 보험자가 추가조사를 비

⁴³⁾ LCCP 353, para. 28.47.

합리적으로 천천히 수행하거나, 또는 보험금청구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추가정보가 입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합리성 요구에 관한 의무위반의 여지는 남게 된다.44)

2.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015년 보험법 제13A조 (5)항에서는 (1)항의 묵시조항 위반에 근거하여 활용가능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보험자의 합리적인 기간 내 보험금지급의무는 묵시계약조항에 근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일반계약법 상 통상적으로 계약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체의 구제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C는 묵시조항의 위반에 기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추가적인 간접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가장 중요한 구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묵시조항의위반에 기인한 일체의 배상액은 전술한 제약요건, 즉 실제손해의 발생, 계약체결시점의 예견가능성 및 손해경감조치의 준수 여부에 근거하는 일반계약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LC는 계약과 관련하여 배상금의 산정에 관한 판례법이 충분히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법 상 "합리적인 배상금"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45)

또한 동 조항에서는 (1)항의 묵시조항 위반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a) 기존의 보험금청구권 및 (b) 보험금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계약 상 명시조항 또는 제정법에 의거하여 이자청구권을 갖는 경우, 계약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로 이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호 독립적인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의 가 액은 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 지체에 근 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지급 지 체 또는 미지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며, 이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6)

⁴⁴⁾ LCCP 353, paras. 28.49~28.50.

⁴⁵⁾ LCCP 353, para. 28.53~28.54.

⁴⁶⁾ LCCP 353, para. 28.57.

3. 약정에 의한 보험자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1) 소비자보험

2015년 보험법 제16A조 (1)항에서는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표시)법(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및 2015년 보험법 상 소비자보험에 관계되는 기타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보험과 관련하여 전술한 제정법조항이 강제법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비자로 하여금 제정법 상 점하게 되는 지위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계약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제(1)항). 이는 소비자보험에 관한 한, 보험자가 약정에 의하여 제13A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묵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묵시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7)

2) 비소비자보험

제16A조 (2)항에서는 비소비자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지급 지체에 관계되는 제정 법조항이 임의법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즉, 비소비자보험의 경우, 보 험자는 약정에 의하여 제13A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묵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 거나, 묵시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예를 들면, 보험금의 일정비 율만큼 보험자의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여타 법률영역과 마찬 가지로 약정에 의한 보험자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은 다음과 같은 투명성요건을 충 족해야만 효력을 갖는다. 즉, 첫째, 보험자는 당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계약 조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둘째, 해당 계약조항은 그 효과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한다.48) 한편 제16A조 (3)항에서는 비소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고의적이거나 무 모한 상태에서 (1)항의 묵시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계약조항은 무효라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고의적 또는 무모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묵시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묵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 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보험기업 내 클레임처리 담당자가 상 여금을 취득하거나, 기업내부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 청구의 유효성 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금지급을 지체하는 악의적인 실무관행을 주요 대상으로

⁴⁷⁾ LCCP 353, para. 28.89.

⁴⁸⁾ LCCP 353, para. 28.93.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보험금청구에 대한 대응 및 처리방식이 무모할 정도로 무원칙적인 보험자에 대하여 적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49)

Ⅳ. 결 론

보험금지급 지체와 관련하여 2015년 보험법은 보험자에 대하여 시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허용함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유효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법률정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15년 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같다. 즉, 첫째, 제13A조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계약 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한다는 것이 일체보험계약의 묵시조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묵시계약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의무로서, 위반 시에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여 일반계약법원칙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유효한 보험금청구 및 정당한 청구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둘째, 제13A조 (1)항의 묵시적인 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간은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조사 및 사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포함하며, 기타 보험의 유형, 청구보험금의 규모 및 조사의 복잡성, 법령이나 규정의 준수 여 부 및 보험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외부요인에 대한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자가 합리적인 반박근거를 갖고서 보험금지급을 지체한 경 우에는 반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13A조 (1)항의 묵시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 주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제13A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묵시조항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제(5)에서는 일반계약법 상 계약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체의 구제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청 구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존의 보험금청구권 및 이자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기업보험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제13A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묵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묵시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배제

⁴⁹⁾ LCCP 353, para. 28.98.

142 무역상무연구 제76권(2017. 12)

또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약정에 의한 배제는 여타 법률영역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또한 보험자가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상태에서 상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한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은 무효로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일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해상보험에 관한 한 영국법준거약관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해상보험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실무계에 시사하는 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동향-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무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9.
- 양승규, 보험법의 원리, 삼지원, 2000.
-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제 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11.
- 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 中出 哲, "イギリス2015保險法の概要", 損害保險研究 第78卷 第2號, 2016. 8.
- Birds, J., Birds' Modern Insurance Law, 9th Edition, Sweet & Maxwell, 2013.
- Clarke, M.,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5th Edition, Informa, 2006.
- ______, "Compensation for failure to pay money due : a 'blot on English common law jurisprudence' partly removed", *JBL*, 2008.
- Davey, James, "Unpicking the fraudulent claims jurisdiction in insurance contract law : sympathy for devil?", *LMCLQ*, 2006.
- Eggers, Peter MacDonald, "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LMCLQ, 2013. 8.
- Guest, A. G. et al, Chitty on Contracts, 31th Edition, Sweet & Maxwell, 2012.
-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Law Commission, No. 353, 2014.
- Lowry, J. and P. Rawlings, "Insurers, Claims and Boundaries of Good Faith", *MLR*, 2005.
- Treitel, G. H., The Law of Contract, 10th Edition, Sweet & Maxwell, 1999.
- Ying, C., "Damages for 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Law Quarterly Reviews, 2006.

ABSTRACT

Main Issues on the Insurer's Duty of Payment of
Insurance Claim in English Insurance Law
- Focused on the Revised Provisions in Insurance Act 2015 -

Gun-Hoon SHIN · Byung-Mun LEE

Where an insurer has unreasonably refused to pay a claim or paid it after unreasonably delay, the existing law in England does not provide a remedy for the insured. Accordingly, the insured is not entitled to damages for any los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surer's unreasonable delay. This legal position differs from the law in Scotland and most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LC thought that the legal position in England is anomalous and out of step with general contractual principles. LC considered that a policyholder should have a remedy where an insurer has acted unreasonably in delaying or refusing payment of claim, and, therefore, recommended a statutory implied term in every insurance that the insurer will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breach of that term should give rise to contractual remedies, including damages. More detailed recommendations of LC are as followings. First, it should be an implied term of every insurance contract that, where an insured makes a claim under the contract, the insurer must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Secondly, a reasonable time should always include a reasonable time for investigating and assessing a claim. Although a reasonable time will depend on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for example, the following things may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that is. (1) the type of insurance, (2)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claim, (3) compliance with any relevant statutory rules or guidance, and (4) factors outside the insurer's control. Thirdly, if the insurer can show that it had reasonable grounds for disputing the claim(whether as to pay or not, or the amount payable), the insurer does not breach the obligation to pay within a reasonable time merely by failing to pay the claim while the dispute is continuing. In those circumstances, the conduct of the insurer in handling the dispute may be a relevant factor in

deciding whether the obligation was breached and, if so, when. Fourthly, Normal contractual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should be available for breach of the implied term to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Finally, In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the insurer should be permitted to exclude or limit its liability for breach of the obligation to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unless such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and such an insurer's right to contract out will be subject to satisfying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Keywords: Insurance Act 2015, 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 Hold Harmless Principle, Indemnity Insurance, Reasonable Time, Reform of English Insurance Law